

1970년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

서진석*

<목 차>

- I. 서론
- II. 1970년대의 국내·외 정세와 치안상황
- III. 1970년대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전의 민간경비실태
- IV. 1970년대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후의 민간경비실태
- 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우리나라의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제도에 대한 사적(史的)인 고찰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단편적인 언급이 있어왔고, 최근에 김정환·서진석(2003)의 연구가 있었다. 이 윤근(1989)에 의하여 민간경비제도의 사적인 구분을 전통적 민간경비와 현대적 민간경비로 나누어 고찰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는 1953년 주한 미군에 의한 군납경비의 유형과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한 용역경비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¹⁾.

1953년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의 원년으로 한다면, 2003년은 만 50주년 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 50년 동안 민간경비제도는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그리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바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0년대에는 군납 경비를 중심으로 당시 외화획득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한국경제의 기반조성에 기여했으며, 1960년대에 북한의 무장공비에 대응하여 국가중요산업시설 경비에 일

* 중부대학교 안전경호학과 조교수, 행정학 박사

1) 우리나라의 전통적 민간경비제도에 대해서는 김정환·서진석(2003)의 「한국경비산업발전사. I」를 참조.

익을 담당하였고, 1970년대에는 국가안보상 역할과 함께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 따라 준경찰력으로서 사회 치안질서유지에 기여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와서는 기계경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88서울올림픽과 '93대전엑스포 등의 국제적 행사에 참가하면서 국위선양과 우리 사회의 치안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치안환경의 변화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역사는 현실에 대한 거울이며 미래를 향한 좌표를 제시하는 산 증거로서 오늘을 사는 지혜의 원천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민간경비제도의 미래 좌표를 설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1970년대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경찰 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준경찰력으로 정책적인 육성을 시작한 시기이다. 그리고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으며,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된 시기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경찰과 함께 사회 치안질서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국민과 사회일반에 치안에 대한 기존의 국가의존성을 탈피하여 '자구사상'과 '자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흔히들 1970년대를 격동의 시기, 과도기적 시기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찰한 후,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여 1970년대의 민간경비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첫째,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전의 민간경비산업의 실태분석과, 둘째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후의 민간경비산업 실태분석, 셋째 이러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현재적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70년대의 민간경비산업과 관련하여 경찰과 경비협회 및 관련 학자들의 각종 문헌 및 연구자료를 기초로 한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II. 1970년대의 국내·외 정세와 치안상황

1970년대는 미·소 양대 진영의 냉전체제가 해빙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중공·일본·서구가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국제사회가 다극화되는 한편, 공산체제의 쇠퇴 등으로 국제정세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사회가 이제까지의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국가 이익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의 시기였고, 사회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와 전근대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혼란의 시대였다. 정치적으로 3선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반정부 운동이 확산되어 긴급조치가 선포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극심한 시기였다.

1. 1970년대의 국제정세

1970년대의 국제정세로는 월남전쟁에서 미국이 지원한 월남이 패배하고 공산화되자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반도의 인접국이 사회주의화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가 손상되었다. 월남전이 패색이 짙어지자 정치·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린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고려하였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함으로써 동서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한편, 중공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 현상은 비동맹국가의 출현과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중공 그리고 유럽 등 다극화 현상으로 변하였다.

1973년의 중동전쟁 이후 아랍권의 국가들은 석유를 무기화 하여, 세계경제를 1930년대 이래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당시 세계적인 불황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높은 물가 고에 시달려야 했다. 우리나라도 53%라는 경이적인 인플레이션으로 1973년의 겨울을 차갑게 보내야 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새로운 조류 속에서 미국·일본 등 해양세력과 소련·중공 등 대륙

세력의 접경지대인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70년대 국제좌표는 미·소·일·중공 등 4강국의 세력 균형점에 위치하게 되었다.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는 미·소·일·중공의 4극 구조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미·일의 2극 구조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국제유대를 유지하면서 소련과 중공의 옹호하에 있는 북한과 대화로서 대결하여야 하는 국제상황에 처하였다.

2. 1970년대의 국내정세

국내 정치분야에서는 1969년 9월 14일 야당의원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3선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고 새헌법으로 확정되었다. 1971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뒤이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²⁾. 그러한 가운데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 발표에 따라 남북 대화가 시작되어 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난관에 부딪치자,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고 장기집권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³⁾.

반정부 운동의 확산으로 위기를 느낀 공화당 정권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긴급조치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1972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1970년대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수출주도형정책, 공업우선정책, 외자의존정책으로 특징되는 경제개발정책을 정부주도하에 추진한 결과 한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⁴⁾. 그러나 경제 발전에 미치지 못한 분배의 불균형과 정부의 공업우선정책으로 인한 이농현상, 경제발전과 상처된 도덕성의 몰락과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나

2) 이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3)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10월 유신의 단행은 박대통령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를 강요하여 날로 높아지는 국민 욕구와 반비례하는 정치적 상황을 가져왔다. 이러한 반민주화는 지식인층의 커다란 반발을 가져와 학원, 언론, 종교, 정계 등 각 분야의 반정부 운동이 가열되고 국제적으로 대미·대일 외교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수출은 1960년 말 3,380만 달러에서 1979년에는 150억 5,550만 달러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GNP성장률)은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연평균 8.5%,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9.5%를 각각 기록하였다.

게 되었다.

정부의 공업우선정책은 농촌의 침체와 낙후를 가져와 이농현상과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초래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1970년대의 근대적 요소와 전근대적 요소가 복합된 시대로 나타났다. 농촌의 피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쇠퇴하기 시작한 농촌경제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렇듯 1970년대의 국내 상황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적인 부작용이 함께 공존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대형 부정사건과 보다 잔인해진 범죄 등을 양산하여 격동기의 충격을 한층 심화시켰다.

이 시기의 남북관계는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즉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이러한 군사력을 토대로 과감한 대북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1970년 8월 15일 북한정권의 지위와 존재를 인정하고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 모색을 주장한 8.15선언을 필두로 하여 1971년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회담 제의로 남북대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합의 통일정책을 도출한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자신감을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3년 북한측이 “고려연방공화국”의 이름으로 유엔의 단일회원국이 되자는 대안을 제시해 오면서 남북관계는 또 다시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경제적인 면에서 남한에 추월을 당하자 점차 폭력통일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른바 3단계 혁명론에 입각하여 1960년대 후반 이후 일련의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하였다.

3. 1970년대의 치안상황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치안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로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진전 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각종 범죄와 교통인구의 증가,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고도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향락산업의 증가, 빈곤층 및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 등으로 각종 사회병리적 현상이 급증하였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력은 장비와 인력의 부족, 박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로 인한 시국치안, 북한의 무장 게릴라 침투에 대비한 대간첩작전과 그에 따른 훈련 등으로 민생치안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지만, 매년 정부 예산상의 우선 순위에 밀려 개선되지 못하였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기본 임무인 민생치안 유지 확보에 있어 한계를 들어내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반되어 가고 있었다.

1970년 전국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340,390건이었으며, <표 2-1>에서 보듯이 매년 평균 6.3%씩 증가 추세를 보여 1979년에는 총 범죄건수가 536,999건에 달하여 우리 사회의 치안상태가 위험수위에 오르게 되었다.

<표 2-1> 1970년대 연도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연도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구분	총 발생	340,390	348,622	401,137	354,403	342,906	391,252	520,795	523,955	509,300	536,999
	검거	300,694	291,918	354,301	321,647	306,687	345,170	460,719	462,704	446,910	496,289
	검거율 (%)	88.3	83.7	88.3	90.8	89.4	88.2	88.5	88.3	87.7	88.0

※ 자료: 경찰통계연보(1970년도~1979년도)

1970년대에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는, 정인숙 여인 살해사건(1970.3.17), 와우아파트 붕괴사건(1970.4.8), 덕성여대 메이퀸 살해사건(1971.6.30), 대연각호텔 화재사건(1971.12.25), 10월 유신(1972.10.17),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1974.8.15), 김대두 연쇄살인 사건(1975.8.13),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건(1977.11.11), 여배우 최은희 납북사건(1978.1.14), 금당 살인사건 발생(1979.6.20), 박정희 대통령 사망(1979.10.26) 등이다. 매년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대형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뿐만아니라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정치적 불안요인도 겹쳐 사회혼란은 극에 달하였다. 이에 경찰은 준경찰력 확보를 위한 제도로 방법원제도, 교통순시원제도, 용역경비업법 제정, 청원경찰법 개정 보완 등을 통하여 치안 질서 유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우렸다.

Ⅲ. 1970년대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전의 민간경비 실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중화학 우선 공업정책을 통하여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동서 양 진영의 화해무드에 힘입어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각종 통제를 비롯한 10월 유신 등 정치적 혼란은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치안수요 증가를 가져왔다.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인한 대규모 산업단지는 시설경비의 수요를 가져와 청원경찰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해 졌으며, 1972년 일본 경비업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1. 정부의 민간경비산업 정책

(1) 치안수요 증가와 경찰의 종합방법 대책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범죄 및 교통인구의 증가, 1일 생활권역의 확대에 따른 사회물량의 확대, 사회 제 문화와 국민의식구조의 다양성 등 새로운 치안환경은 치안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케 하였다. 치안수요의 급증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경찰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치안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우선 당면한 현실적 문제로는 첫째,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 경찰대상 및 경찰인력 증가추세이다. 1960년을 기준으로 범죄발생(형사) 지수와 교통사고발생 지수, 인구 지수 그리고 경찰인력 지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1965년에 범죄발생(형사) 지수는 297.2 교통사고 지수는 213.4 인구증가 지수는 114.6 인데 비해, 경찰인력 지수는 104.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는 범죄발생(형사) 지수가 263.7 교통사고 발생 지수는 742.0 인구증가 지수는 124.5 이고, 경찰인력 지수는 131.7에 이르렀다. 경찰수요에 비해 경찰인력의 증가는 극히 미흡한 실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중요 경찰대상 및 경찰인력 증가추세

연도별 구 분 실·지수	1960		1961		1962		1963	
	실제현황	지수	실제현황	지수	실제현황	지수	실제현황	지수
범죄발생(형사)	325,531	100	473,532	146.0	723,985	222.4	710,780	218.3
교통사고 발생	6,342	100	5,922	93.4	5,150	81.2	6,053	95.4
인 구	24,994,117	100	25,694,108	102.0	26,277,635	105.1	27,489,848	110.0
경찰 인력	33,035	100	29,835	90.3	29,910	90.5	33,879	102.6

연도별 구 분 실·지수	1964		1965		1966		1967	
	실제현황	지 수						
범죄발생(형사)	858,818	263.8	967,594	297.2	852,795	262.0	817,614	251.2
교통사고 발생	7,047	111.1	13,472	213.4	14,884	234.7	19,337	304.9
인 구	28,181,096	112.8	28,647,176	114.6	28,379,356	113.5	28,701,915	114.8
경찰 인력	33,882	102.6	34,572	104.7	39,352	119.1	40,622	123.0

연도별 구 분 실·지수	1968		1969		1970		1971	
	실제현황	지 수						
범죄발생(형사)	908,357	279.0	927,762	285.0	857,280	263.3	858,473	263.7
교통사고 발생	25,249	398.1	32,441	511.5	37,243	587.2	47,060	742.0
인 구	29,532,549	118.2	30,145,919	120.6	30,580,241	122.4	31,109,709	124.5
경찰 인력	40,121	121.5	42,498	128.6	43,003	130.2	43,516	131.7

※ 자료: 내무부(1972), 『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 pp. 196-197.

둘째, 경찰관 인구분담률이다. 1971년 말 현재 경찰관 1인당 인구분담률은 720:1로서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예와 비교할 때 질서유지와 봉사활동에 완벽을 기대하기에는 과중한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과로근무자의 발생을 야기하였다.

<표 3-2> 경찰관 1인당 인구분담률

국 가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불란서	서 독	일 본	서반아
분담인구	720	543	555	316	407	578	423
한국과의 비 교	1	-177 0.7	-169 0.7	-404 0.4	-313 0.5	-142 0.7	-297 0.5

※ 자료: 내무부(1972), 『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 p.197.

국가주요정책여건(예컨대,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있는 대결”,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규모의 확대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나 국내사회여건(예컨대, 도시인구증가현상, 사회물량유통의 확대, 사회 제 문화와 국민의식구조의 다양화 등)에 연유된 치안상태는 치안수요의 급증을 예견케 해주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증강은 불가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평균 인구증가를 1.8%가 지속될 경우 1976년의 총인구는 약 3,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현 경찰 정원이 고수된다면 1976년의 경찰관 1인당 인구분담률은 804:1로 1971년의 720:1보다 84명이 가증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인력의 획기적인 증강 없이는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치안행정기획단(단장 崔錫元 치안감)을 구성하여 종합방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이 경비업법을 제정한 해인 1972년에 우리 경찰에서도 민간 방법단체의 지도육성과 관계유지에 전력한다는 방침 하에, 직업적 방법기업인 경비회사(Security Co.)의 창설운영과 지도감독 및 협력관계를 법제화 할 것을 1973년도 사업으로 계획한 바 있다.

경찰당국에서는 방법시설 증설방안의 하나로 “방법기구개발심사위원회” 설치를 1973년도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과학적 방법기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방법기구개발심사위원회를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다⁵⁾.

(2) 협력치안체제와 경비산업

5) 이는 현재 기계경비산업의 발전에 따라 우리 경비업계의 주요 현안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안문제가 1973년도에 이미 경찰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다(내무부, 1972. 『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 참조.

경비회사의 필요성과 법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원경찰과 업무영역의 중첩이 발견되면서 양 제도에 대한 일원화 문제가 경찰당국에서 검토되었다. 청원경찰과 경비업체는 실질적 기능을 같이 하므로 어느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학계와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미 1972년에 경찰당국에서는 경비용역회사를 설립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일원화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요시설 및 사업장 기타 인적·물적 보안관리대상의 보호를 위한 경비보장업무를 국가행정작용에서 분리 기업화시키므로써, 첫째 국가재정상의 절약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며, 둘째 고용증대를 통한 사회정책에 이바지하고, 셋째 나아가서는 유사시 경찰지원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래 <표 3-3>은 경찰당국에서 검토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용역회사법의 우열비교표이다.

<표 3-3> 우열비교표

적 요		청원경찰법		경비용역회사법	
		장	단	장	단
제 도 면	1.제도활용 난이		○	○	
법활용면	1. 자진해서 이용할 수 있다.	○		○	
	2. 누구든지 자유롭게이용할 수 있다.		○	○	
내 용 면	1. 관리가 편리하다.		○	○	
	2. 경비절차 용이	○		○	
	3. 보장성이 좋다.		○	○	
	4. 장래 발전성 있다.		○	○	
	5. 합리적이다.	○		○	
	6. 능률적이다.		○	○	
	7. 신분한계 명확	○		○	
	8. 경비능력 보충 용이		○	○	
	9. 무기구입 관리 용이		○	○	
	10. 책임한계 명백		○	○	
	11. 감독기능 원활		○	○	
	12. 할거적 폐해	○			○

※ 자료: 내무부(1972), 『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 p.299.

이를 기반으로 내무부 경찰국에서는 1973년에서 1974년도 사업계획으로 경비용역회사법 제정을 확정된 바 있다.

2. 중요산업시설 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정비

우리나라 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1967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리에 진행되면서 50~60년대의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국민소득의 증가(1970년 242\$, 1972년 304\$, 1974년 519\$, 1976년 752\$)와 함께 국가 기간산업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다.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1970년 12월 호남고속도로가 차례로 건설되었고, 철강, 정유, 비료, 전력, 시멘트등 대규모 중화학 공업단지가 울산, 포항, 여수 등 전국에 조성되었다. 경제발전에 따른 중요산업시설의 증가는 민간경비의 수요를 늘어나게 하였다. 1970년에 경비회사 5개사 경비시설수 137개소 경비원 3,882명에서, 1976에는 경비회사 9개사에 경비시설수 286개소 경비원 5,022명으로 증가하였다.

민간경비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중요산업시설의 증가,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위협 그리고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가안보 및 방법력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졌다.

특히 정부에서는 1968년 1.21사태를 겪고 1970년대부터 국가중요산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경비의 개념을 도난이나 화재예방의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용역경비의 경우도 도급을 두는 시설방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시설주에게 두게 됨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경비회사에 경비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용역경비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갔으나 관련법의 미비와 용역경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업체가 겪는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 예로 당시 내무부 치안당국이 “국가 중요시설 경비대세 확립”(1972. 6.12:경비 2040-4712)제하로 전국 260개소의 중요산업 시설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최근 일부 시설에서 민간경비 용역회사와 시설경비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여 하청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시설경비체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질적 신분

관리와 무기의 법적 문제와 국가비밀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에 있어 비합법적인 새로운 형태의 시설방호체제로 발전될 우려가 있사오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설경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경비는 평시에 청원경찰관 또는 소속직원이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수행하고, 비상사태 시에는 소속직원과 종업원으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에 의하여서만 방호임무를 수행하는 자위의 태세를 강조하는 대통령 훈령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실 것.
2. 이의 참뜻을 이해하시고 소속직원이나 종업원이 아닌 신분을 가진 경비원에 대해서는 1972년 7월 31일까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관으로 하실 것.
3. 중요시설 경비임무 수행상 합법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는 청원경찰관과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종업원으로 편성된 직장예비군만이 무장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그 이외의 자에게 무장을 시켜 경비하는 사태가 없도록 유의하실 것.”

이와 같이 강경한 의미를 담은 공문을 각 중요산업 시설주에게 보내자 용역경비업체에서는 용역경비에서 청원경찰에 의한 “용역청원경찰경비”로 경비형태를 변형시켰다. 이때부터 “용역청원경찰경비”라는 용어가 생긴 것이다. 당시 경비회사들은 이러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아울러 경비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과 사고예방으로 중요산업 시설주로부터 공신력과 신뢰를 받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북한의 대남 침략야욕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후방의 국가중요시설과 산업시설에 대한 파괴 및 교란목적으로 무장간첩과 게릴라 침투가 잦아지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훈령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청원경찰은 1962년에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나, 제도적 비현실성 때문에 시설주인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설치·운영을 기피하여왔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중요성과 함께 청원경찰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경찰당국의 치안기획단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도되었다.

즉, 청원경찰은 국가경찰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인 특수경찰로서이

그 법제상의 비현실성 때문에 청원경찰의 수요기관(시설)에서 청원경찰의 설치 운영을 기피하는 현실이 뚜렷하고 실제운영에도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법상 청원경찰관이 담당할 경비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도의 현실을 위하여 경비대상을 넓힐 것이 요청된다. 둘째, 청원경찰의 경비를 국고 관리토록 되어 있어 그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경영자 측에서 볼 때에는 일정자금의 동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다. 셋째, 청원경찰관의 법적인 신분관계가 불명확하여 제 급여를 포함한 신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가 불충분하고 따라서 사기저하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무기휴대의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개발에 따라 중요산업시설이나 각종 중요사업장은 늘어날 것이며, 특히 1970년대의 국내치안정세는 북한의 침략도발이 가중될 것인 바, 이들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경비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발전적인 청원경찰제도의 강구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첫째, 청원경찰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이다. 청원경찰제도의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즉 경비대상의 제한성을 완화시켜 인적, 물적 대상으로 확대시키고 청원경찰 운영 경비관리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국고관리제를 지양하며 그밖에 감독체제, 신분관계, 후생, 급여 및 사회보장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경영자 측의 청원경찰 기피현상을 시정한다. 둘째, "청원경찰수요자 부담원칙"하에서 정부기관(정부청사경비, 국회경비, 법원경비 등)이나 국가중요시설 경비는 단계적으로 청원경찰로 대체시키므로써 일반 경찰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함과 아울러 특정시설 경비를 위한 국민재정 부담을 지양한다. 셋째,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킨다. 즉 교육미필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교육 이수자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 근무능률향상을 기한다.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청원경찰제도의 현실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부

- 6) 중요시설이나 중요사업장의 경영자, 또는 국내주재 외국기관이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청원경찰관의 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이나 기관의 경비에 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요경찰관을 배치하여 주는 청원경찰제도는 청원경찰이 직접으로는 특정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작용이라는 점, 경찰권의 발동이 청원자의 신청에 기한다는 점 그리고 경비도 청원자가 부담한다는 점등에서 볼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도적 의미에 있어서는 경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이상규, 신행정법론(下), 법문사, 1970. pp.46-47. 재인용).

터 1976년까지 청원경찰법 및 동시행령 개정, 정부등 중요시설 경비는 단계적으로 청원경찰로 대체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 1월 20일 대통령훈령 제28호 “국가 중요시설 방호지침”은 주로 방호를 위한 방호인력은 청원경찰로 하라는 내용이었다. 1974년 4월 13일 대통령훈령 제36호로는 공업단지 및 중요산업시설에서는 오직 청원경찰로 경비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경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1976년 3월에는 울산지구 산업시설 방호 주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다.

① 중요시설의 자위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시설 경비원을 1981년도까지 청원경찰로 대체하여 시설경비에 대한 자위력 향상을 기할 것

②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각 시설주는 다음과 같이 목표 년도까지 연차 계획을 세워 대체 할 것

년도별 목 표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100%	10%	20%	20%	20%	20%	10%

③ 정밀 방호진단 실시로 시설경비능력을 표준화 할 것

그러나 한때 중요시설경비 방호지침에서 내무부 안은 청원경찰 확보를 “100%로 전환” 하라는 것이었고, 상공부(산하산업기업체 포함)안은 “가능한 확보”로 각각 지침내용이 달라서 한때 혼란이 있었으나, 곧 단일 안으로 결정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갈려는 민간경비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청원경찰제에 대하여는 법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청원경찰제는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적 여건으로 생긴 제도이다. 법제정 이후 제도의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그 당시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였다.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제정된 청원경찰법은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6호로 전문을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제도를 합리화하였다.

1972년 7월 5일 가까운 일본에서는 경비업법이 제정 공포되어 민간경비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우리나라 경비업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 당시 일본에는 경비회사 775

개사 경비인원 41,146명으로 제도적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1965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국제박람회와 같은 국제적 행사에 참가하여 경비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의 민간경비발전에 자극을 받은 우리나라는 치안담당자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요산업시설 보호에 있어 그 성격상 국가가 이를 관리·운영해야하는 청원경찰제도보다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에 대한 관심이 정책당국에서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3. 민간경비의 필요성 증대

1973년 1월 12일 조선일보기사는 “경비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보류된 적이 있었다.

당시 기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부터 몇몇 기업체가 경비용역을 미8군 노무처에 군납하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발전, 유류, 원자력시설 등의 경비업무를 하청(용역)을 받아 일하는 업체가 있으나 법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6년 이미 200여 경비보장회사가 생겼으며 미국에는 1850년부터 보안경비회사가 생겨 일반의 민간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내무부는 이 제도가 활용되면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고용은 증대할 수 있게 되며 경비업무의 전문화로 사고의 위험 등이 적어지고 유사시 경찰 지원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여 사회 경제적 입장에서 용역경비의 실정과 필요성을 강조하여 경비업이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金一煥)에서는 1965년 2월부터 월남에 파병되어 공훈을 세운 제대 장병들에 대한 회원 취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방안 중 회원의 취업보도의 일환책으로 민간경비가 제대군인에게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범아공신(주)(사장 尹 璣)과 협조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업체로 1972년 7월 7일부로 설립키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동년 7월 12일에는 국방부장관(劉載興)의 승인을 얻어 재향군인회와 공동으로 민간경비개발 및 재향군인회원 취업보도, 경비업법 제정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회원 취업보도는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국가중요 산업시설 경비개발(도급계약)에도 어려움이 생기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1972년 7월 재향군인회 산하 범아공신이 설립되었으나, 경비용역 개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첫째, 경비업법의 미비로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중요시설경비 및 재산과 인명보호를 민간경비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치안본부는 몇 개 업체에 불과한 경비회사를 불신하여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중요시설주에게 용역경비를 못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었다.

둘째, 당시 국가중요시설경비는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어 경비업체가 용역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제정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 선진국 경비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용역경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기관의 절대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서는 1973년 9월 6일 청와대를 비롯하여 15개 관계기관에 법 제정의 필요성 등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셋째, 경비업계에서는 1975년과 1976년 일본의 종합경비보장(주)를 2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일본 경비업 관련자료 등을 수집하여 당시 치안본부 경비과장 윤종한 경무관 실무책임자 박보영 총경 박동범 경감 등을 만나 협의하였으며, 내무부 차관 서정화씨 등과도 법제정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교환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건의서를 제출한지 3년 만인 1976년 12월에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경비용역 개발에 대한 건의」는 민간경비의 취지, 중요성, 법제정의 필요성과 외국 경비업의 발전상 등을 당시 범아공신 김정환 부사장이 작성, 35쪽의 소책자로 1973년 7월 발간하여 재향군인회 명의로 1973년 9월 6일부로 15개 정부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이 건의서로 인하여 민간경비는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용역경비업법 제정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4. 민간경비 활동상

1970년대 초의 민간경비는 치안당국이 1972년 6월 12일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공문(2040-4712)에 의한 부정적인 조치, 특히 주 계약처인 시설주에게 민간경비를 “비합법적

7) 건의서 내용은 김정환·서진석, 2003, 「한국경비산업발전사 I」, pp.86~94. 참조.

이고 새로운 형태의 시설방호체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큰 타격을 입게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기업의 재산을 외부에 노출하여 타인에게 경비를 위탁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하 에서도 1964년 1월부터 대한석유공사는 범아실업공사(사장 尹 璣)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대한석유공사는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법의 미비로 어려움을 격자 내무부 치안본부장에게 용역경비업 개발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경비원이 법적 신분과, 둘째 유사시 책임한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관련법의 제정과 법적 보장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용역경비관련 법의 제정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70년부터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전까지의 민간경비 업체수는 <표 3-4>와 같이 국내기업 경비업체 5개, 미8군 군납업체 4개 등 총 9개 업체였다.

<표 3-4> 용역경비업법 제정이전의 국내기업 경비업체 현황
(1975년 12월말 현재)

회사명	설립일	경비시설수	경비원수	주요 계약처
汎亞實業公社	1958. 2. 4	41	568명	대한석유공사, 호남정유
韓國保安公社	1971. 1. 22	61	544명	한국전력
東西企研(株)	1972. 2. 24	6	54명	동아제약, 종합건물관리
汎亞公信(株)	1972. 7. 7	15	398명	한국비료
韓國警保(株)	1974. 12. 19	46	484명	한국전력
합 계		169개소	2,048명	

1973년 10월에는 군, 경찰, 방위병 등이 담당하던 경부, 경인, 호남고속도로의 경비업무를 용역경비로 전환하고자 범아공신(주)은 재향군인회 명의로 당시 감독기관인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경비 계획』을 작성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나, 민간경비는 무기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설부에 의하여 기각되었다⁸⁾.

1970년대 초에는 법적 미비와 민간경비에 대한 일반 인식의 부족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발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8) “고속도로 경비계획”의 전문은 김정환·서진석의 전게서 pp.95~99. 참조.

5. 민간경비업체의 운영 실정

1950년대 미군납 경비로 시작한 우리나라 경비업체는 법제정 이전까지의 운영에 있어서 미·일에 참고자료가 있었으나, 군에서 제대한 간부들에 의한 군대의 지식에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1962년에 제정된 청원경찰법과 1968년에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규정된 경비업무 수행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투철한 국가관에 입각한 준군인으로서의 한국적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경비제도의 정착에 노력하였다.

1970년대의 경비업체들은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일반의 부족한 인식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분업화, 전문화와 더불어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힘입어 경비업체는 내실을 기하고 회사의 조직과 체계를 세우며, 교육훈련을 더욱 충실히 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꾀하는 등 경비업무의 전문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경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업체만이 경비계약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국내 6개 경비업체가 체결한 경비계약서는 <표 3-5>와 같다.

<표 3-5> 법 시행전 중요 경비 계약처

계약년월일	계약처	경비구역	계약업체
62. 5. 11.	KOSCO	부산, 서울, 울산	범아실업
63. 2. 3.	FLOUR-KOREA	울산	"
63. 3. 6.	BECHTEL INTERNATIONAL	부산	"
64. 1. 15.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울산,인천,서울,부산,대구,대전,마산,군산,광주,원주	"
67. 3. 27	FLOUR-KOREA	제3비료공장건설공사현장	"
68. 3. 1.	유공왕십리 6개 대리점	유공왕십리6개대리점외곽	"
68. 10. 1.	호남정유주식회사	여수,인천,부산,대구,대전,목포,전주,포항,오천,김포,판교,서울	"
71. 2. 1.	텍사코코리아	서울 한남동	"
71. 5. 21.	일본까소리	울산	"
71. 9. 14	코리아 엔지니어링	울산	"
71. 1. 1.	한국전력(주)	전국발전소,변전소,사무소	(주)한국보안공사
72. 4. 14.	GULF OIL	진해	범아실업
72. 12. 31.	한국비료공업	울산	범아공신(주)
72. 12. 30	지요다화학건설(주)	울산	□□
73. 1. 10	(사)울산석유화학단지협의회	울산	□□
73. 3. 1.	동아식품, 동아제약(주)	안양, 청주	동서기연 (주)
73. 4. 2	(주)석유화학지원공단	울산	□□
73. 9. 1.	한국마사회	서울	"
73. 9. 21.	한국카프로락탐(주)	울산	"
73. 9. 21.	세방기업(주)	부산	"
73. 10. 1.	고려종합운수(주)	부산	"
73. 10. 1.	세방석유(주)	군산	범아실업
73.11. 1.	신성개발(주)	서울	범아공신(주)
74. 1. 1.	은정실업(주)	서울	"
74. 4. 1.	AOC-K (항공사운영위원회)	김포공항	한국안전기업(주)
74. 4. 4	새한자동차주식회사	서울	범아실업
74. 11. 1.	미국은행서울지점	서울	"
74. 10. 25.	아소마코프레이손	서울	"
74. 12. 1	남해화학(주)	여수	한국경보(주)
76. 3. 22	한국콘티넨탈카아본공업	부평	범아실업

6. 미 7사단 철수로 인한 군남 경비업의 타격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국내 민간경비산업을 주도하던 미 8군 군남경비는 미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의 철수로 큰 타격을 입게되었다. 미군의 철수는 경비분야 뿐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의 주민 생계까지 위협하였다. 미군 1개 사단의 철수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군납경비의 후유증은 1970년 말까지도 군납업체 질서의 와해를 가져왔으며, 덩핑 등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러나 군납조합의 조정으로 기존업자들이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으나, 1970년대 초에 비하여 경비 시설수 70여 개소가 감소하고, 경비인원도 약 1,000여 명이 감소하였다. 기존 군납업체들 가운데는 업종 전환을 하는 업체도 있었으며, 국내기업 경비도 겸하는 등 군납업체의 일대 개편이 이루어 졌다.

1975년 12월 말 현재 군납경비업체의 현황은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군납경비업체의 현황

(1975년 12월 말 현재)

회 사 명	설립년월일	경비시설수	경비원수	비 고
新圓企業(株)	1959. 1. 30	3개소	148명	춘천, 원주, 경기 광주지역
龍進實業(株)	1954. 7. 1	36개소	665명	서울, 경기지역
慶和企業(株)	1964. 3. 20	42개소	1,106명	의정부, 동두천지역
奉信企業(株)	1965.10. 19	19개소	726명	평택, 군산, 대전, 왜관지역
京信企業(株)	실적이 없고 가등록한 업체			
瑞興企工(株)	실적이 없고 가등록한 업체			
豊起建業(株)	실적이 없고 가등록한 업체			
합 계		100개소	2,645명	

7. 도난경보기 및 CCTV 보안 시스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1966년부터 정부는 전자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하였으며, 수출의 호황에 따라 경제성장도 8.5%를 기록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강도, 절도 등의 강력범죄가 빈발하였다. 강·절도 범죄의 증가는 인력경비수요와 더불어 도난경보기 등 CCTV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왔다.

도난경보기 등 기계경비시스템은 제한된 구역에 설치하여 수신기로 음향을 감지하여 외부침입에 대처하는 것으로 주로 미닫이문, 환기통, 창문, 금고, 귀금속함, 들창문 등과 개인주택, 금은방, 금융기관, 사무소 등에 설치하였다.

도난 경보기의 생산·판매·수출은 1969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전자공업진흥법중 국산화촉진 전자기기의 세부품목에 전자응용기기 및 장치에 경보장치(도난·화재)가 포함되어 도난경보기의 제작·판매가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어서 196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8일간) 제1회 한국전자전람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당시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회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TV, 칼라TV, 도난경보기의 상품이 전시되었다.

감지기인 센서(sensor)의 발전은 기계경비의 발전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센서는 3대 기본 센서인 광센서, 온도센서, 자기센서 등으로서 각종 물리현상이나 화학현상을 검출하고 그것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자의 총칭이다. 센서는 창문 출입문 등 장소에 따라 초음파, 레이더, 진동, 적외선, 자석경보기로 설치하여 이상유무를 감지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대부분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지에서 수입하여 판매·설치하였으나, 점차 원자재를 수입 국내에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 대표적인 도난경보기 판매·설치업체는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도난경보기 판매·설치업체 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거 래 처	비 고
合同電子工業社	河廷容	서울 종로구 장사동 182-2 한도B/D	특수기관 일반주택	
國際電子工業(株)	鄭一模	서울 종로구 장사동 220 대영B/D	특수기관 일반주택	
世 運 社	朴世運	서울 종로구 장사동 세운상가 337	일반주택	
조아전자공업사	동휘	대구시 남산동 613-24	일반주택	

우리나라의 CCTV 시스템(Closed Circuit Television System)산업은 70년대 중반부터 몇몇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조립산업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후 사회 각 부문의 방법, 방재, 방호의 필요성에 맞추어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 수요 CCTV를 비롯하여 각 정부투자기관 수요의 방법·방호용 CCTV와 주요 산업체에 공급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70년대 와서 합동전자, 국제전자 등의 유명 방범기기 제작회사 10개 업체가 이때 출범하게 된 것이다.

1977년에는 제8회 한국전자전람회에 처음 초음파집중경보장치(Total Security System) 등 방범기기 시스템을 출품하여 관람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대표적인 방범기기업체는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1970년대 방범기기업체

NO	업체명	설립년월일	대표자	주소	주생산품	비고
1	합동전자통신(주)	1971.1.20	하명용	서울 성동구 자양동 625	방범기기, CCTV	
2	국제전자공업(주)	1971.3.6	정일모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9	무전기, CCTV	
3	한국전자경보(주)	1971.8.25	이준복	서울 종로구 당주동 5	경보시스템, CCTV	
4	오리엔탈전자공업(주)	1971.11.24	김환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	CCTV, 경보기	
5	조아전자(주)	1973.8.30	이동욱	대구 서구 평리동 1334	감지기, 경보기	
6	한국통신(주)	1974.3.4	고성욱	경기 부천 원미구 원미동 8-3	무인경보시스템, CCTV	
7	광림전자공업(주)	1975.2.4	김홍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12	경보기, 감지기	
8	한남전자산업(주)	1976.6.1	김종훈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7-22	감지기, CCTV	
9	서흥전자공업(주)	1977.9.5	임학철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0	CCTV	
10	K&T 전자(주)	1978.3.1	김재한	경기 부천 중구 삼정동 264	경보기, 감지기	
11	이마산업(주)	1978.9.9	이준구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	경보기, 감지기	

이 시기의 우리나라 방범기기 발전과 관련된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1966. 1. 전자공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 1967. 2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설립, 1969. 1. 전자공업진흥법 제정 공포, 1969. 4. 전자공업진흥법 제8조(국산화 촉진 전자기기) 전자용용기기 및 장치에 경보장치 항목 포함, 1969 .11. 제1회 한국전자전람회 국립공보관에서 개막, 1976. 1. 도난·화재경보기 첫 수출, 1976. 4. 한국 전자산업 진흥회 설립, 1977. 10. 제8회 한국전자전에서 방범기기인 초음파집중경보장치(Total Security System-7)를 한국경비방재(주)에서 출품, 1979. 11. 범아실업공사에서 외곽경비용 PS-1 기계경비시스템을 (주)유공 서울 주유소에 설치하였다.

<표 3-9> 70년대 우리나라 경보기(도난, 화재)생산, 수출 통계표

(단위: 수량 1,000 개 금액 1,000달러)

구분 \ 연도별	1975	1976	1977	1978	1979	합계	
생산	수량	0.1	13	24	222	145	404,1
	금액	55	46	576	1,877	2,114	4,668
수입	수량						
	금액						
수출	수량		10.4	9	46	73	138,4
	금액		16	267	743	1,644	2,670
내수	수량	0.09	1.6	2	137	72	212,690
	금액	43	29.5	125	475	470	1,142,5
비고	1. 수출은 1976년부터 시작됨. 2. 1970년대 품목 경보기는 도난과 화재의 합계통계임.						

※ 자료 : 한국 전자공업협동조합 제공.

8. 한·일 경비 문화 교류

1972년 7월 5일 가까운 일본에서는 경비업법이 제정 공포되어 민간경비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우리나라 경비업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한 국내 민간경비는 외국으로부터 기술 및 관련업무의 제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동경올림픽 이후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관련법도 제정한 일본과의 관련을 맺고자 (주) 범아공신은 당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일본 지회장인 이인기(李麟起)씨를 통하여 일본의 종합경비보장(주) 무라이 준(村井 順) 사장에게 경비업무에 관한 기술·행정업무제휴를 담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서신을 보내 한·일 경비업무제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1) 상호 제휴대상 업체

① 한국측 : 범아공신(주), ② 일본측 : 종합경비보장(주)

2) 제휴내용

① 경비에 고나한 기술행정업무에 고나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찰 의견교환 한다.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경비시설 및 기기에 관한 사항, ㉡ 경비업법에 관한 사항, ㉢ 회사조직 또는 근무제도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 경비 방법, ㉥ 경비에 관한 출판물 또는 기타 사항

② 제 3 국에 대한 경비용역의 진출이 필요할 경우 상호합작에 관한 사항

③ 한국주재 일본인의 중요시설물 또는 중요공사 중에 있어서 경비사항협조

④ 기타 상호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 제휴를 취하는 방법

① 상호 서신교환에 의하는 방법

② 상호 회사원 직접 왕래에 의한 방법

③ 기타 인편에 의한 방법

이상과 같이 경비업무에 관한 각종 제휴를 위하여 상호방문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그 후 합작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결실로 범아공사(주)에서는 197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당시 석유화학지원공단 경비대장 김재의(金在義)씨와 한국비료공업(주) 경비대장 유재현(柳在賢)씨를 일본국 종합경비(주) 무라이 준(村井 順) 사장의 초청장과 신원 및 재정보증으로 동경연수소에 입소하여 연수교육을 마친 바 있다.

9. 치안수요의 증가와 준경찰력의 증강

1970년 전국의 총 범죄발생 건수가 340,390건이었으나, 1979년에는 총 범죄건수가 536,999건에 달하였다. 6대도시의 범죄도 1973년 179,141건이었으나 1979년에는 293,577건으로 매년 평균 9.1%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치안상태가 위험 수위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고도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향락산업의 증가, 빈곤층 및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범죄의 증가, 차량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경찰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표 3-10> 연도별 6대도시 범죄발생추세

구 분		년도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발생	비율							
6 대 도 시	전국	발생	비율	354,403 (100.0)	342,906 (100.0)	391,252 (100.0)	520,795 (100.0)	523,955 (100.0)	509,300 (100.0)	563,999 (100.0)
	계	발생	비율	179,141 (50.0)	176,460 (51.5)	204,441 (52.3)	265,510 (51.0)	276,970 (52.9)	274,315 (53.9)	293,577 (52.1)
	서울	발생	비율	97,512 (27.5)	90,799 (26.5)	110,291 (28.2)	135,724 (26.0)	146,796 (28.0)	151,258 (29.7)	160,702 (28.5)
	부산	발생	비율	38,807 (10.9)	41,506 (12.1)	46,514 (11.9)	59,748 (11.5)	58,208 (11.1)	57,670 (11.3)	57,080 (10.1)
	대구	발생	비율	15,239 (4.3)	15,924 (4.6)	17,548 (4.5)	25,053 (4.8)	23,980 (4.6)	25,110 (4.9)	29,291 (5.2)
	광주	발생	비율	9,926 (2.8)	8,061 (2.4)	7,581 (1.9)	12,828 (2.5)	16,529 (3.2)	15,639 (3.1)	14,112 (2.5)
	인천	발생	비율	10,372 (2.9)	9,631 (2.8)	10,090 (2.6)	14,394 (2.8)	14,344 (2.7)	12,616 (2.4)	15,691 (2.8)
	대전	발생	비율	7,285 (2.1)	10,539 (3.1)	12,417 (3.2)	17,563 (3.4)	17,113 (3.3)	12,022 (2.4)	16,701 (3.0)
	기타	발생	비율	175,262 (49.5)	166,446 (48.5)	186,811 (47.7)	255,285 (49.0)	246,985 (47.1)	234,985 (46.1)	270,422 (47.9)

※ 년평균 증감율 +8.8%, 6대도시 +9.1%, 기타지역 +8.5%임. 6대도시 구성비 52.0%임

※ 자료 : 경찰통계연보(1973년도~1979년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치안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찰력 자체의 증가는 국가 예산과 인력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찰력을 대신하여 사회 치안질서유지 역할을 할 준경찰력의 증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준경찰력 확보를 위한 제도로는 방법원제도, 교통순시원제도, 용역경비업법 제정, 청원경찰법 개정 보완 등이 있었다.

(1) 방법원제도

방법원제도는 주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위사상(自衛思想)에 근거하여 「내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시작되었다. 1953년에 와서 유급방법원제도로 바뀌었고, 1972년에는 종전에 각 동 단위에서 지·파출소 단위로 개편되었다. 1976년에는 경찰력 부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인원의 30%를 증원하였다.

(2) 교통순시원제도

교통순시원제도는 197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써 그 임무는 보행자의 안전보호와 통행방법지도, 주·정차 단속, 교통장애물 제거 및 기타 교통경찰관의 보조를 위한 단속임무 등이었다. 교통순시원으로 선발된 자는 경찰에서 일정기간 교육하여 지방직 고용원 신분으로 채용하였다.

(3) 용역경비업법 제정

1953년 미군의 군납경비가 시작되고, 1962년 5월에 코스코(KOSCO)와 경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어서 1963년 2월에는 후로아(FLOUR)사와 울산정유공장 건설공사 경비계약이 체결되는 등 민간경비산업의 시장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가 기간산업시설이 전국 곳곳에 건설되고 1976년에 이르러 건물의 출입통제 및 방범 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수요가 급등하여 전문화된 경비용역업체가 필요하게 되면서, 기존 경비회사들의 요청으로 용역경비업법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게 되어 1976년 12월에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4) 청원경찰법 개정 보완

1962년 4월 청원경찰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인 신분인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한 채 국가중요시설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경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31명의 청와대 기습을 비롯하여 1970년대에 와서는 더욱 격화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시설경비업무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의 청원경찰법을 1973년과 1976년에 2차례 걸쳐 전면 개정하고 보완하여 국가 중요시설경비를 위한 준경찰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채택한 것이다. 청원경찰의 주임무는 시설경비, 간첩침투 대비, 무장정계, 출입자 통제 등이다.

10. 주민 자율방범활동과 방범원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치안수요의 증가와 경찰력의 부족으로 시작된 주민자율방범활동은

점차 확대되면서 1963년 5월 19일에는 내무부 치안본부 공문 (내치보 2033~3059호)로 제도화되었다. 1972년에는 종전에 각 동 단위로 구성되었던 방범위원회를 각 지·파출소 단위로 개편하고 경찰서 단위에는 방범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73년에는 경찰에서 방범대원의 근무감독을 담당하고 방범위원회에서는 방범비의 징수와 지출을 담당하며 각 방범위원회에 대한 감독은 방범협의회에서 하도록 하였다.

1976년에 들어서 경찰력부족으로 인한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방범원을 30%씩 대폭 증원토록 하였다. 이어 1978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방범원들의 급료를 인상하자, 이들의 급료는 월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방범원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 제도가 아니었으며 준거규정인 치안본부 지시 『방범위원회 운영요강』 과 경찰국지시 『방범대원 운영지침』 을 토대로 운영되었다.

당시 방범대원 운영지침에 의한 방범대원의 임무는 범죄예방 순찰활동과 현행법체포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근무시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루 10시간 근무하였으며,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루 9시간 근무하였다. 따라서 방범원들은 주로 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중대사고발생시 현장근무를 할 수 있었다.

방범원은 파출소장의 선정에 따라 방범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었다. 방범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은 23세에서 40세미만으로, 신체 및 체력은 범인 검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자로서 병역의무를 필한 남자로 되어 있었다.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나 준경찰적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주로 중학졸업 이상자가 채용되었다.

방범원의 정원은 방범위원회에 따라 달랐으나 8명에서 2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역내의 방범비를 징수할 수 있는 주민의 잠재적 경제능력과 방범원의 증가필요성 등 지역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3-11> 전국 방법원 현황

(1977.12.31)

시도별 구분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방법위원회	1,122	349	90	121	80	19	41	15	49	306	111	22
방법원	7,444	4,247	878	815	199	72	236	137	250	443	143	24
위원회당평균	7	12	10	7	25	4	6	9	5	1.5	1.3	1

※ 자료: 경찰청 제공.

이러한 방법원제도에 대하여 당시 치안본부에서 방법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전국적으로 각도에 1개 파출소씩 방법대원 없는 시범파출소를 운영한바 있으며, 그 결과 방법대원의 필요성이 재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1985년에 와서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방법협의회를 해체하고 방법원제도는 폐지되었다.

IV. 1970년대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후의 민간경비 실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의 197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에서 경비산업이 본격적으로 양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은 그동안 군납경비와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현장에서 부족한 치안력을 대신하면서도 법적 뒷받침이 없었던 경비업계에 제도적·법적 기틀이 마련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국가와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기계경비분야의 개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됨으로써 경비업 발전을 위하여 업계의 공동 현안을 정부나 사회에 건의 혹은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비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경찰당국의 경비업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경비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1972년 일본의 경비업법 제정 등은 국내에도 경비업 관련 입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현안이 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는 범아공신과 공동으로 국방부(장관 劉載興)의 승인을 받아 민간경비 사업 개발 및 재향군인회원 취업, 경비업법 제정 등에 관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경우회(회장 최치환)에서도 치안본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배경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하여 강력범죄의 발생이 급증하였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력은 장비와 인력의 부족, 시국치안, 대간첩작전과 그에 따른 훈련 등으로 민생치안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으나, 매번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되지 못하였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기본임무인 민생치안 유지 확보에 있어 한계를 들어내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반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 직면하여 1970년대 초 경찰에서는 부족한 경찰력에 대체할 수 있는 준경찰력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여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경비용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6년 1월 김성주(金聖柱) 치안본부장이 취임하면서 보다 완벽한 치안확보대책방안으로 각 업무소관별로 준경찰력의 확대강화를 위한 시책연구과제를 지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치안본부 경비과에서는 용역경비업법의 입법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하였다. 방호반장 박동범(朴東範) 경감을 비롯한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입법을 위하여 자료수집에 착수하였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을 답사하여 경비실태를 정밀히 조사·분석하는 한편, 당시 주한 미8군 시설 경비용역업체인 경화기업, 봉신기업, 용진실업, 신원기경 등의 운영실태 및 노무관리, 장비관계 등의 제반 현황을

파악하였고, 재향군인회 산하의 독립업체인 범아공신과 범아실업공사에서는 울산정유공장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용역에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들 업체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외사경찰을 통해 미국 및 일본의 경비업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여 약 7개월 간의 노력 끝에 법안을 완성하여 본격적인 제정작업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⁹⁾.

(2) 용역경비업법 제정의 필요성

1) 우리나라 경찰력의 여건

우리나라 경찰은 다른 나라 경찰과 같이 국민의 안전보호와 사회공공질서 등 본연의 임무 외에도 안보 치안의 책임까지 가중되어 그 직책은 세계 어느 나라 경찰보다도 막중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급진적인 사회발전에 따라 치안수요의 격증과 제반 치안 여건 또한 복잡·다양화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현재의 경찰력만으로 그 막중한 임무를 완수해 낸다는 것은 역부족인 현상으로서 이는 국민 누구나 공인하는 사실이다. 이의 입증 자료로서 참고로 우리나라 경찰력의 인구부담비율을 외국경찰과 비교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 1인대 인구부담비율은 약 8백명인데 비해 자유중국은 6백80명, 일본은 5백70명, 미국 3백85명, 영국 4백13명, 불란서 2백97명, 서독 3백99명으로서 외국은 평균 약 5백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외국의 평균치보다 3백명이나 더 과중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치안문제는 그 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실정을 정부정책의 기초로 삼기 마련이다. 이러한 여건은 정치·군사·경제·문화·사회 등의 분야를 통해서 어느 만큼의 안정된 기반이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며, 이에 따른 치안수요의 여하에 의해 경찰업무의 복잡함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치안시책 역시 이에 부응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경찰은 그 본연의 임무보다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응해서 안보적 역할이 우선적인 실정으로서 안보와 치안이라는 2원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

2) 준경찰력의 확보

9) 본 내용은 1995년 11월 24일 지금은 작고하였지만, 캐나다에 거주하던 박보영씨로부터 「한국경비산업 발전사」 저자인 김정환이 항공 우편으로 받은 원고를 정리한 것임.

이상과 같이 우리 경찰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의 보강도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나,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개선 등으로 경찰인력의 합리화 능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현시국에 적용하는 발전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써 선진 각 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역경비는 국가에서 직접 경비를 담당하지 않아도 될 경미한 분야에 한해서 그 경비업무를 국민 스스로의 자력방위으로써 부담토록 육성시켜 나가는 한편, 경찰은 보다 기본적인 사회공공질서 확립에 전념함으로써 차원높은 치안의 완벽을 이루려는데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준경찰력의 확보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기업경비의 절감

용역경비업은 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대형화와 기업의 독창성으로 기술부문의 개발이 날로 발전됨에 따라 성장하였다. 각 기업은 핵심적 활동인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이에 부수적이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경비업무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전담 또는 대행토록 하는 것이 기업경비의 절감과 정신적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현대의 분업화 원리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인 것인 만큼 경비업의 법적 제도화는 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경비업무의 민영화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현행 청원경찰제도이다.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개념은 그 성격상 판이할 뿐만 아니라 그 요원의 신분·임용·감독·권한 등에 있어서 청원경찰법이 규제한 것에 비해 용역경비업법은 경비업무, 즉 경비제도의 순수한 민영화를 도모한다.

현재 우리가 시행중인 청원경찰제도는 일반적 경비보다는 안보적인 차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관계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은 필연적으로 총기의 구입, 일정고시액 이상의 보수 지급, 신분상의 경찰감독 등 청원주 측에서 부담해야 할 제약과 경비가 과중한데다가 불편한 점이 많아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현저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그 단점과 결함을 보완하고 경비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서 민영화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3) 용역경비업법의 제정경위

1976년 9월초 김성주(金聖柱) 치안본부장의 “준경찰력 확보방안”에 관한 지침이 시달된 후, 각 부서 소관별로 연구 검토한 보고내용 중에서 4가지 안건이 치안본부장의 결재를 받았고, 이어 내무부장관을 거쳐 1976년 9월 20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용역경비업법이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김성주 치안본부장의 “준경찰력 확보방안”에 관한 지침내용은 경비과 소관으로 청원경찰법 개정 보완, 용역경비업법 제정이었다. 보안과 소관 사항으로는 방법대원 증원 방안이었으며,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순시원제도 채택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로부터 본격적인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대략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76년 9월 28일 내무부 법제담당관의 법안 심의 통과

10월 6일 동법안을 관계 각 부처에 개별통보하여 협조의뢰

10월 15일 공화·유정희 합동의정회의 상정. 보고 및 질의 답변

10월 22일 공화·유정희 합동정책심의회 상정. 보고 및 질의 답변

10월 23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심의결과 회시

10월 27일 공화당 법안심의결과 회시

제1무임소장관으로부터 심의결과 회시

11월 15일 법제처 주관으로 차관회의 통과 (일부수정)

11월 16일 국무회의 통과

11월 20일 동법안 법제처로부터 국회에 제출

11월 23일 ~ 11월 25일

국회내무위원회, 법사위원회에 출석

동법안에 대한 담당 전문위원회 보고 설명

12월 3일 ~ 12월 6일

국회내무위원회 및 내무소위원회 개최

동법안에 대한 심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

12월 7일 국회내무위원회에서 동법안 심의 가결

12월 8일 국회법사위원회 회부·심의 (일부수정)

12월 14일 국회법사소위원회 통과

12월 15일 국회법사위원회 통과

12월 17일 국회본회의 상정 통과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최초의 경비업법이 제정·공포되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용역경비업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비로소 법적 제도적인 틀 안에서 보호·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되었다. 법 제정 후 1977년 6월 30일 용역경비업법시행령, 같은 해 11월 22일 내무부령 제242호로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당시 용역경비업법 제정에 기여한 내무부 및 경찰 측 관계자로는 내무부장관 김치열(金致烈), 내무부차관 서정화(徐廷和), 치안본부장 김성주(金聖住), 치안본부 제2부장 이순구(李舜九) 치안감, 치안본부 경비과장 윤종한(尹鍾漢) 경무관, 치안본부 방호계장 박보영(朴普榮) 총경, 치안본부 방호주임 박동범(朴東範) 경감 등이다. 이상의 관계자 중 당시 내무부차관 서정화씨는 1973년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재직시부터 용역경비업법 제정 및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경비과장 윤종한씨, 방호계장 박보영씨, 박동범 주임도 법 제정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일본의 민간경비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을 이기지 않았다.

2. 민간경비의 실태

(1)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의 설립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용역경비협회는 용역경비업법 제15조에 의거 1978년 8월 17일 서울 무교동의 엠파이어호텔에서 10명의 회원사 대표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경비협회는 동년 9월 21일 내무부로부터 설립인가 승인(1978. 9. 21. 내경비 2040-8356호)을 받은 후 9월 29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등기(1978. 9. 29. 등기번호 1735호)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은 현대적인 민간경비제도가 도입된 지 26년의 세월이 지난 후, 1976년 용역경비업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경비협회의 설립으로 새로운 발전의 토대 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당시 경비회사는 11개 사로서 자동적으로 협회회원이 되었다. 협회 임·직원은 초대 회장 최치환(崔致煥), 부회장 윤관(尹墮)(범아실업공사 대표이사), 김형중(金衡中)(봉신기업 대표이사), 이사에 문학동(文鶴東)(한국경비보장 대표이사), 김명욱(金明旭)(용진실업 대표이사), 김정환(金正煥)(범아공신 대표이사), 김이남(金利男)(경화기업대표이사), 최진엽(崔進燁)(한국경비산업 대표이사), 이동웅(李東雄)(한국경보 대표이사), 김남수(金南洙)(동우공영 대표이사), 감사에 김동수(金東秀)(신원기경 대표이사), 사무국장 박보영(朴普榮)이었으며, 협회 사무국 직원으로는 관리과장 김서규(1978.9.1), 경리담당 안금선(1978.9.1), 운전기사 우동호(1978.9.6)가 임명되었다.

또한 협회의 설립목적은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하나의 용역경비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협회의 주요업무는, 첫째 용역경비업무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둘째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셋째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넷째 경비소요진단에 관한 사항, 다섯째 손해배상기준의 연구발전과 쌍방 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분쟁에 관한 화해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였다.

1976년 12월 31일 법제정 후 1978년 9월 21일에 경비협회가 설립되면서 용역경비업자들은 내무부 치안본부 및 지방경찰국에 경비업 허가서류를 제출하였다. 제일먼저 제출한 한국경비보장(주) 문학동사장(충북경찰국장, 경무관 출신)은 허가 제1호가 되었고, 그 후 1979년 12월 말까지 내무부장관 허가 11개사, 서울시장 허가 2개사 경기도지사 허가 1개사 합계 14개사가 허가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1976년 12월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후 허가받은 회사 중 국가 중요시설경비에 있어서 안보적 차원에 의한 경비는 무기휴대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대표적인 중요산업시설인 한국전력(주)의 경비를 하고 있던 봉신기업은 1971년 1월부로 계약 만료 후 종료되었다. 한국보안공사¹⁰⁾는 1972년 1월부터 한국전력과 경비용역을 체결한 바 있었고, 한국경보(주)와 1975년 1월부터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의 발전소, 변전소, 자재창고 등 전국적 시설수 100여 개에 경비원 수 1,164명으로 용역경비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무기휴대가 불가능하므로 청원경찰로 대체하여야

10) 당시는 한국경비산업(주)이었음.

한다는 치안당국의 강력한 지시로 한국전력은 1978년 5월에 용역경비를 해약하고 자체 경비단을 조직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에 관련된 두 회사뿐 아니라 경비업계 전체 일대 타격을 받았으며 1976년 12월 용역경비업법 시행 초기부터 국가중요시설경비업무의 주체가 청원경찰이나 용역경비나로 혼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접한 8개사의 경비업자들은 1978년 5월 17일 (임시)용역경비협회 명의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상황을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¹¹⁾.

아래 <표 4-1>는 용역경비업법 제정 후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 현황이다.

<표 4-1> 용역경비업법제정 후 경비회사 현황표 (1979년 12월말 현재)

허가번호	허가일자	회사명	대표자	주계약처	시설수	경비인원			비고
						청경	용역	합계	
내무장관 1	77.12.19	한국경비보장(주)	문학동					81년3월 한국안정시스템으로 변경됨	
2	"	한국경보(주)	이동웅	한국전력(주) 남해화학	8	13	190	203	78년5월 한국전력과 해약으로 478명 감원됨
3	78.2.13	(주)한국보안공사	최진엽	한국전력(주) 한국증권거래소	19		114	114	78년5월 한국전력과 해약으로 686명 감원됨
4	"	(합자)범아실업공사	윤 관	대한석유공사 호남정유(주)	50	119	631	750	
5	"	범아공신(주)	김정환	한국비료(주) 석유화학지원 공단	36	62	691	753	
6	78.4.12	용진실업(주)	김명옥	미8군 군납	28		716	716	
7	"	신원기경(주)	김동수	"	3		148	148	
8	"	봉신기업(주)	김형중	"	18		652	652	
9	"	경화기업(주)	김이남	"	45		1,126	1,126	
10	78.8.7	동우공명(주)	김남수	대우그룹계열사	5	20	110	130	
서울시장 1	788.16	한국안정기업(주)	황현진	김포공항	4	115	49	164	
경기지사 1	79.2.1	한국종합경비보장(주)	김진철	인천항만	3		13	13	
내무장관 11	79.6.9	동서기연(주)	정준혁	동아계약 건물관리업	22		149	49	
서울시장 2	79.7.6	동방홍산(주)	홍승건	일반빌딩	5		74	74	
합 계		14개사			246	329	4,663	4,992	

11) 탄원서 내용은 김정환·서진석 전계서 pp.133~136. 참조.

(2) 추석귀성객 혼잡경비의 시작

1978년 9월 21일 한국경비협회가 발족됨으로써 1979년도부터 본격적인 협회 사업이 계획·시행되었다. 한국경비협회는 당면문제 중 1979년도 용역경비 계약시 적용되는 경비료 조정문제부터 착수하였다. 한국경비협회에서 용역경비 적정요율표를 작성 각 회원사에 배부하여 앞으로 경비용역 계약 체결시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당시 1인당 경비료는 13만원이었다.

1979년 9월 교통부 육운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고속버스 승차권 예매와 귀성객 수송에 대한 추석혼잡경비를 한국경비협회에 의뢰하여 협회 주관으로 혼잡경비를 수행하였다. 일차경비는 1979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예매장 경비이고, 2차 경비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송경비였다.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의 용역경비에 의한 혼잡경비가 시작된 것이었다¹²⁾.

이 혼잡경비의 수행은 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수행한 큰 행사로서 협회 산하 6개 사가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 민간경비업계가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

(3) 인력경비에서 기계경비의 개발

1970년 하반기에 와서 민간경비의 새로운 특징은 인력경비에만 의존해왔던 경비 체제가 도난·화재경보기 설치로 인력과 기계의 혼합 경비업무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세운상가에는 경보기를 제조·설치·판매하는 점포도 하나 둘씩 늘어났으며, 대표적인 회사는 합동전자, 국제전자, 세운사 등으로 일반 고급주택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최초의 홈시큐리티(Home Security)를 시작하였다.

경비업체에서도 사람과 기계가 혼합하여 상호 보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범아공신(주)은 1974년 일본 종합경비보장사에 연수생을 파견하여 기계경비의 기초지식과 관제센터, 감지기, 감시기 등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이미 1967년 일본경비보장(현 SECOME)과 종합경비보장에서 경비업무에 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973년에는 무인은행, 무인점포에 무인경비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1975년에는 컴퓨터에 의한 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12)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용역경비에 의한 혼잡경비가 시작된 것이었다.

하였다.

1979년에는 인력경비에만 의존하고 있던 중요산업시설 중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원주 저유소, 호남정유(주), 여수공장 및 저유소의 공장 및 저유소 철조망에 PS~1 경비시스템을 개발, 외부에서 침입하면 절단이나 월담을 조기 발견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당시 모의 간첩훈련시 침입자를 조기발견 예방하여 담당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아래 표는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다.

<표 4-2> 인력경비 및 기계경비의 특징

인력경비	구 분	기계경비
1. 근무한계, 태만, 고의 또는 졸림등으로 인한 경계제한 2. 이상사태발생시 초동조치 가능	기 능	1. 기계별 고유기능에 따라 24시간 경계가 능 경비효과 상승 2. 기계적 상황통보로서 초동조치가 늦음
1. 연간 급여등 인상요인 2. 인력관리 및 간접비 발생	경 비	1. 주로 5년간 계약으로 고정금액 2. 통계적으로 인력경비의 60~70%선
1. 인사 근무관리등 복잡 2. 관리담당자 필요 3. 경비사고시 책임한계 복잡	관 리	1. 용역회사 전문가가 관리 2. 책임한계가 인력경비보다 뚜렷함
1. 안전성, 경제성 및 관리면에서 기계 경비에 비해 전근대적임	경 영	1. 기업운영에 있어서 분업화, 전문화로 합리화 2. 자체운영→용역화→기계경비화추세
1. 경비업무 이외의 부대업무 가능 2. 광범위한 지역에는 경계사용지경발생(예, 순찰원이 지나간 후 다음 순찰시까지 사각)	기 타	1. Man/Machine System으로 단점을 보완. SYSTEM의 구성에 따라 경계 중복 및 사각이 없음

(4) 용역경비에 대한 정부 육성책

정부는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 제정공포 이후 용역경비의 활성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자 1979년 7월 24일 “용역경비 육성방안”을 안건으로 치안본부회의실에서 치안본부, 경비협회, 경비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였다.

이어서 8월 31일에는 치안본부에서 “용역경비 적극 육성책”을 발표하여 많은 관심과 발전을 기대하게 하였다.

1) 치안본부 용역경비 육성책 세부 내용

치안본부는 1979년 7월 24일 상오 10시에 “내무부치안본부 용역경비 육성방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치안본부에서 송재근 제2부장 외 4명, 경비협회 고동철 회장 외 1명, 경비업자 대표 사장 외 13명 등이 참석하여 용역경비 육성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별과를 1979년 8월 31일 확정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내무부는 79년 8월 31일 경찰경비에 투입되는 경찰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경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역경비업 육성방안을 마련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용역경비는 경비원 300명 이상을 보유업체로 기동성 있는 경비를 할 수 있는 업자를 대상으로 허가하고 앞으로 이들에게 주요시설경비 및 행사장 경비(전국 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제외)호송경비 등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또 용역경비원은 제복착용과 함께 계급별로 조원, 조장, 반장, 대장의 표시장을 달게하여 자체적으로 10일간의 기본교육을 실시 소양을 높이고 관할 경찰서장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추석, 연말연시 때 고속버스터미널, 역등 귀성객 경비를 용역경비로 대체하고, 2단계로 정부 각 부처 산하 유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경비도 용역경비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1979년 9월중에는 시도별로 유관대상업체 책임자 회의를 열고 자체경비원 10명 이상을 둔 전국 기업체에 대하여서도 용역경비를 권장키로 했다. 그리하여 1979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추석귀성객에 대한 혼잡경비는 종전 경찰인력으로 하던 것을 용역경비가 맡아 매표, 수송객의 질서유지에 큰 성과를 올린바 있다. 또한 10명 이상 자체경비원을 두고 있는 전국기업체는 234 업체이며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119, 부산 13, 경기 40, 강원 2, 충북 1, 충남 7, 전북 19, 전남 7, 경북 18, 경남 8개사 였다. 이들 업체들에게 자체경비를 용역경비로 전환토록 권장문을 발송하여 큰 성과를 보았다.

그러나 법제정 후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용역경비와 청원경찰과의 관계,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복제 및 장구, 신입 경비원의 교육, 경비협회 운영 등이었다.

용역경비와 청원경찰과의 마찰은 경비업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

청원주인 시설주로부터 문제가 제기 되었다.

첫째는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중요시설의 용역경비)의 법의 해석과 시행이었다. 당시 울산공업단지에는 중요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한국비료공업(주) 울산공장은 1972년 12월 30일에 범아공신(주)와 경비계약을 체결, 경비원 49명을 청원경찰로 배치 하였다. 그러나 청원주인 한국비료공업 울산공장은 경비업무 수행에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시행에 관한 문제점이 일어나 치안본부에다 청원 경찰 임용 신청 및 신상책임에 대한 질의를 1978년 9월 20일에 한 바, 치안본부는 그 질의에 대한 회시를 10월 12일자로 하여 용역경비원도 청원경찰로 추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70년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 정세와 치안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을 용역경비업법 제정을 기준으로 법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1970년대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와 사회 치안수요가 급증한 시대적 상황을 가져왔다. 국외적으로 국제사회의 다변화와 국가간 경제적 이익추구로 인한 질서 재편으로 인하여 남북 대치상황인 우리나라에 자주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었다. 국내적으로도 급속한 경제성장은 도시화와 공업화를 수반하여 다양한 경비수요를 창출하였다. 정치적 불안은 시국치안 수요를 가져왔으며, 인구의 도시집중과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혼재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은 사회병리적 현상을 수반하여 각종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은 자체 경찰력을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을 적극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2년에 경비업 관련 법제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과학적 방법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방법기구개발심사위원회” 설치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안문제로 남아 있는 청원경찰제도와 민간경비제도의 우열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과 청원경찰제도의 정비 등이 이시기의 대표적인 경찰의 정책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역사적인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민간경비산업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경찰에서도 용역경비업법 제정을 서둘러 확정 공포하였다. 법 제정으로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고, 청원경찰과 용역경비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경찰 당국의 지도·감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추석귀성객 혼잡경비를 경찰의 협조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육성책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1970년대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양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경찰과 함께 사회 치안질서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국민과 사회일반에 치안에 대한 기존의 국가의존성을 탈피하여 “자구사상”, “자위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의 민간경비산업은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느낀 경찰의 준경찰력 확보의 일환으로 치안 보조수단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다분히 경제논리에 의해서 정부의 재정적 투자없이 혹은 저렴한 재정투입으로 중요시설 경비와 혼잡경비 등 사회적 손실예방과 범죄예방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경비산업이 오늘날까지 사회 일반으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원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 점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유사하게 민간경비산업이 도입된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간경비산업의 외적인 요인들이 두 나라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일본은 우리보다 4년이 앞선 1972년에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에는 우리나라에 9개 경비업체에 5,022명의 경비원에 불과하였으나, 일본은 1,901개 업체에 77,766명의 경비원을 보유하고 있다. 1979년에는 우리나라가 15개 업체에 5,012명의 경비원이었던데 비해, 일본은 2,622개 업체에 104,765명의 경비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기점으로 경비업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이미 대중화에 성공하여 질적인 전문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정부의 민간부문확대라는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치안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경찰사 편찬위원회(1995), 「경찰 50년사」, 서울: 경찰청.
- _____ (1985), 「한국 경찰사Ⅲ」, 서울: 치안본부.
- 김정환·서진석(2003), 「한국경비산업발전사」, 서울: 도서출판 백산.
- 내무부(1972), 「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 서울: 내무부 치안국.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1993), 「재향군인회 20년사」, 서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 박보영(1979), 「용역경비」, 서울: 한국용역경비협회.
- 배궁찬 외 4(1999),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서울신문사(1979), 「주한미군 30년」, 서울: 향림출판사.
- 서진석(2000),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남: 경원대학교.
- 유광호 외 5(1987), 「현대한국경제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윤근(1989), “한국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Abstract

On the Study Expansion Step of Security industry in the 1970th

Seo, Jin Seok

In the 1970th, Security industry in Korea based auxiliary measures for confrontation about increase of a crime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owever, This based growth of 1980th - 1990th Security industry. On the Study consider expansion step of Security industry in Korea with classification policing conditions in the 1970th and Security Law in the 1976th. In the 1970th, Security industry in Korea play an important part by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inspire " Security of one's own accord" into the hearts of the people.